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교육목적) 본 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애천, 애인, 애국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학술적 이론과 학문의 방법을 연구·교수하며 교회에 봉사하는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본교의 명칭은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라 칭한다.

제 3 조(부속기관 및 부설교육기관) ① 본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을 둔다.

1. 부속기관 : 도서관, 생활관, 출판부
 2. 부설교육기관 : 한국어교육원, 평생교육원, 천일국연구원
- ② 부속기관 및 부설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학위과정 및 정원

제4조(학위과정) ① 본교는 신학전문대학원으로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과정별 학과전공 및 정원) ① 본교에 설치하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전공 및 학생 정원은 다음과 같다.

과 정	학 과	정 원
석 사	참부모신학	30
	평화NGO학	
박 사	참부모신학	8
	목회학	

(개정 2018. 9. 1)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편입학·재입학의 경우에는 본 조 ①항의 입학정원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북한이탈주민(신설 2018. 9. 1)

제3장 수업연한.재학연한.학기.수업일수.휴업일 등

제6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4학기로 하고, 목회학박사학위과정의 경우 4학기, 신학박사학위과정의 경우 6학기로 하며,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2학기로 한다. 다만, 학점의 조기취득,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등에 의하여 학위수여 요건을 조기에 갖춘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시킬 수 있다.

제7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10학기, 목회학박사학위과정의 경우 12학기, 신학박사학위과정의 경우 1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8. 9. 1.>

제9조(수업)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1)

1. 학교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2. 교과별 수업일수는 교과목의 특성 및 교과운영상 집중수업이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되 학점당 15시간 이상(실습, 실기과목은 30시간)강의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조 ①항에 규정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구분하며, 주중과 주말에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0. 9. 1)

제10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개교기념일
4. 일요일과 기타 국정 공휴일

② 임시휴업 및 방학기간의 변경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이를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입학 및 편입학

제11조(입학 및 전형시기) ① 본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9. 1>

② 당해 학기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제12조(입학자격) ① 본교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국내.외 정규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제5조 제②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정한 한국어 능력 또는 영어능력을 구비하고 본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개정 2013. 3.1)

③ 삭제 (2016. 3. 1)

제13조(전형방법) ① 본교 일반전형에 지원한 자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입학한다.

1. 서류심사
2. 삭제 (2016. 3. 1)
3. 면접

② 본교 특별전형을 지원한 자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입학한다.

1.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에 의한다. 다만, 입국사증 관계로 입국이 불가능한 지원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에 의하여 조건부로 예비선발하고 구술시험 후 최종선발 할 수 있다.

제14조(입학 전형 및 허가) ①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교회추천서 1부
3. 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4.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개정 2013. 3. 1, 2018. 9. 1)

②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2.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성적증명서 1부
4. (삭제)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개정 2013. 3. 1, 2018. 9. 1)
6. 본인 호적등본 1부(한국계 외국인의 경우)
7. 본인 여권사본 1부.(본 대학교에서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 함)
8.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③ 입학은 입학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5장 휴학.복학.학과변경.자퇴.제적.재입학.수료.졸업

제15조(휴학) ①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군입대 휴학자는 입대 예정일) 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석.박사학위과정에서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수행이나 해외근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

가를 받아야 한다.

③ 등록을 필하고 휴학하였던 자가 원하는 학기에 복학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예납으로 간주한다.

제 16 조의 2 (전과/전공 변경) ① 전과/전공변경은 재학기간 1/2선 이전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

② 전과/전공변경한 자의 이전 이수학점은 인정교과목 담당교수의 1인의 동일전공 교수로부터 학점인정을 받은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2016. 3. 1 개정)

③ 전과/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과/전공변경신청서
2. 성적증명서 (2008. 9. 1 신설)
3. 학점인정신청서 (2018. 9. 1 신설)

제17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2.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 분납신청 시 종강전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 (2016. 3.1 개정)
3. 재학연한을 초과한 경우
4. 삭제
5.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위배하여 총장으로부터 제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제19조(재입학) ① 본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 규정 제18조 5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② 재입학은 해당 학년도의 입학정원에서 재적인원을 제외한 인원의 여석이 있을 때 매 학기 초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

③ 삭제

④ 재입학생이 이미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퇴 및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제적전의 재학연한과 재입학 후의 수업연한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⑥ 학위논문제출 연한이 만료되어 제적된 자 중 재입학한 경우 재학연한은 재입학한 학기부터 석사2년, 박사3년 이내로 하며, 휴학 및 논문학기 연장 신청은 불허한다. (신설 2018. 9. 1)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구수료자 재입학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신설 2018. 9. 1)

제20조(수료) ①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2016. 3. 1 삭제)

③ 소정의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 <별지 서식 1>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장 학위논문 및 학위 수여

제21조(논문제출자격) ① 논문을 제출하려는 학생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전공시험과 외국어시험으로 한다.

제22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학위논문) 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학위논문의 대체) 학위논문대체에 대해서는 졸업요건에 맞도록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2018. 9. 1 개정)

제25조(공개발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학위논문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8. 9. 1 개정)

제26조(심사위원)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심사위원 추천서를 교무학생처에 제출하여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석사학위청구논문에 있어서는 3인, 박사학위청구논문에 있어서는 5인으로 한다. (2018. 9. 1 개정, 2019. 9. 1 개정)

제27조(논문심사 및 전공종합시험) 학위청구논문심사와 전공종합시험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2018. 9. 1 개정) (2016. 3. 1 개정)

제28조(심사의결)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의결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29조(재심사)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적절한 수정과 보완을 거쳐 1학기 이상 경과한 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2016. 3. 1 개정)

제30조(논문제출 시한) ① 학위청구논문의 제출기한은 과정별 재학연한 이내로 한다.(개정 2013. 3. 1)

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결정으로 2학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2008. 3. 1 신설)

제31조(학위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 및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교무회의의 사정과 교무학생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2019. 9. 1 개정)

제32조(학위논문의 공표 및 포상) ①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9. 1 개정)

② 학위청구논문은 우수논문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학위청구논문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권장하며, 우수논문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학위수여의 취소) 석.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장은 교무회의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학위기 서식) 본교에서 수여하는 서식은 <별지 서식 2> 및 <별지 서식 2-1>과 같다.

제35조(학위종별)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

과 정	학과(진공)	학위종별
석 사	참부모신학	신학 석사(Th. M) 목회학 석사(M. Div.)
	평화NGO학	평화NGO학석사 (M.A. in Peace NGO.)
박 사	참부모신학	신학 박사(Ph.D.)
	목회학	목회학 박사(D.Min.)

(개정 2018. 9. 1)

제7장 교육과정 운영 및 성적관리

제36조(교육과정) 과정별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37조(학점의 종류) 학점은 교육과정상의 교과목을 수강하여 취득하는 교과학점과 논문연구 등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취득하는 연구학점으로 구분한다.

제38조(과정별 이수학점) ① 과정별 이수학점은 졸업요건에 맞게 교무규정 및 교과과정 시행 세칙에서 정한다.(개정 2019. 3. 1)

② 교과목의 이수학점 단위는 교무회의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3. 1)

제39조(선수과목) (삭제 2013. 3. 1)

제40조(학점교류) ① 본교 학생이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와 협정관계에 있는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본교와 협정관계에 있지 않은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으자 하는 경우 취득교과목과 인정교과목간에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과장으로부터 학점인정 확인을 받은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2008. 9. 1 개정, 2019. 3. 1 개정)

②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생이 본교에서 수강을 요청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본 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학점은 총 취득학점은 석사학위 과정에는 9학점, 박사학위과정에는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2008. 9. 1 일부 삭제)

제41조(학업성적 평가) ① 학점취득을 위하여 학기 당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② 학업성적의 평가는 9등급으로 하며, 그 표시방법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	95점 ~ 100점	4.5
A ⁰	90점 ~ 94점	4.0
B ⁺	85점 ~ 89점	3.5
B ⁰	80점 ~ 84점	3.0
C ⁺	75점 ~ 79점	2.5
C ⁰	70점 ~ 74점	2.0
W	수강철회	Withdraw

I	평가자료 미비	Incomplete
F	70점 미만	0

③ 수강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나 학적부에는 'W'로 기재된다. 다만, 수강철회는 수업일수의 2분의 1(7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④ 'I'를 받은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 소정의 기일 내(성적 공고일 경과 후 4주일 내)에 성적평가에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평가된 성적은 'I' 대신에 학적부에 기재된다. 다만, 소정의 기간 지나도 성적평가를 제출하지 않으면 'I'는 자동적으로 'F'로 처리된다. (2016. 3. 1 개정)

⑤ 성적평가가 'F'인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다. 재수강한 과목은 성적평가에 재수강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전에 'F'로 평가된 과목은 학적부에서 삭제된다.

제8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42조(등록)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소정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석사과정에서는 최소 4학기, 목회학박사과정에서는 최소 4학기, 신학박사과정에서는 최소 6학기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등록금을 분납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 이전에 분할납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해당 학기 종강전까지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최초 납부금액은 등록금액의 30%로 한다. (개정 2016. 3. 1)

③ 수업연한 내에 해당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등록은 정규등록과 논문등록으로 구분한다.

⑤ 학위과정만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매학기 반드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

⑥ 석.박사학위과정에서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하는 학생은 논문지도비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3. 3. 1)

⑦ 이미 납부한 등록금 및 납부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등록금 반환)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등록금을 반환하되, 그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편입생의 입학일 전 :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반환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44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수강신청 기간 내에 졸업요건에 맞게 수강과목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

② ② 수강신청은 매 학기 9학점까지 신청 가능하며, 학과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논문지도학점의 경우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 9. 1)

③ 수강신청과목변경은 개강 후 1주 이내에 한하며, 교무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매 학기 개설된 교과목 중 수강신청자가 5명 미만인 교과목은 개설을 취소한다. 그러나 총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 5명 미만이어도 개설할 수 있다. (2019. 9. 1 개정)

⑤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장 연구과정, 공개강좌

제45조(연구과정) ① 4년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특수과제에 대하여 수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구과정 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 학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별지 서식 3>를 발급할 수 있다.

제46조(공개강좌) ① 공개강좌는 본 대학원의 정상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생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9. 1)

②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매개강시 총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10장 교원의 교수시간

제47조(교원의 교수시간) ① 본교 전임교수의 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전임교수 중 연구전담교원과 강의전담교원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0. 9. 1)

② 보직 교수의 교수 시간은 따로 정한다.

제11장 학생자치활동

제48조(학생회) 본교에 학생의 자치활동기구로서 학생회를 두며,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제49조(학생준칙) 기타 학생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은 학생준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장 장학금.학생포상 및 징계

제50조(장학금) ① 근면 성실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51조(포상) 학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교발전에 공이 많은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52조(징계)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는 총장의 결정으로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13장 직제

제53조(조직) 본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제14장 교무회의.교수회의

제54조(교무위원회) ① 본교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회의를 두며, 총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교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55조(교수회의) ① 본교의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임교수로 구성하는 교수회의를 둔다.

② 교수회의는 교무학생처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는 전체교수회의와 학과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는 학과 교수회의로 나눈다.

제15장 대학평의위원회

제56조(대학평의위원회) ① 본교에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자를 포함한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4명
2. 직원 3명
3. 학생 1명
4.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③ 평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56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7조(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원우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4.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58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59조(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0조(대학평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회 의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평의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평의원회 의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16장 자체평가

제61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위원회는 기획사무처에 설치하여 운영하며 기획사무처장, 교무학생처장, 총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사무처장이 된다. (2019. 9. 1 개정)

② ‘위원회’는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62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 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자체평가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63조(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사항)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평가 실시한다.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14. 기타 총장이 학교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7장 대학원위원회

제64조(대학원위원회)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0. 3. 15)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신설 2020. 3. 15)

② 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6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의 1/3이상 요청, 기타 심의 사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신설 2020. 3. 1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장 보칙

제67조(학칙 개정)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개정안을 최소 일주간 사전 공고하여 의견수렴 후 대학원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 . 3. 1)

② 삭제 (개정 2020 . 3. 1)

③ 개정된 학칙은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

제68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0 . 3. 1)

제69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한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 3.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논문제출 시한) 제2항 규칙은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수료생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과정별 이수학점) 제1항은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40조(학점교류)의 규정은 이 학칙 시행이전의 석.박사과정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입학자격), 제19조(재입학)의 규정은 이 학칙 시행이전의 석.박사과정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과정별 이수학점) 제1항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학과), 제35조(학위종별), 제38조(과정별 이수학점)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학과), 제35조(학위종별), 제38조(과정별 이수학점)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